

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서

(앞쪽)

		허가번호:	호
허가 받는 자	성명		
	주소		
대상 문화유산	명칭		
	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		
허가 사항	개요		
	위치		
	내용		
	기간		
허가 조건			
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허가합니다. 년 월 일 국가유산청장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			

유의사항

1. 이 허가는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2.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3.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(신고기간 경과 시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).
4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(같은 법 제4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 - 나.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 - 다.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5.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.
6.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「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.
7. 관계 법령과 위의 각 호를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.